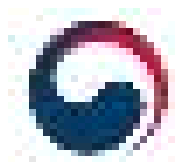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2025. 4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 배경 및 주요경과	1
II. 현황	2
III. 그간의 성과와 한계	4
IV. 기본방향	9
V. 세부 추진과제	10
1.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10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17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	21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25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	32

[붙임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붙임2]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I.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

□ 추진 배경

- 학교폭력이 전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1차 : '05~'09, 2차 : '10~'14, 3차 : '15~'19, 4차 : '20~'24

❖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차 기본계획('20~'24)'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학생 간 관계회복을 강조하였으나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 증가
- 이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을 수립하여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로 '학교폭력 시 불이익' 인식을 확립

☞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 교원·학부모·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견 수렴('24.10.~'25.2.)
 - 학교급별·권역별 교원 간담회 11회('24.10.~12.)
 - 학부모 정책 토크 콘서트('24.10.26.)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담회 10회('24.10.~12.)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현장 간담회 및 의견수렴 5회('24.10.~12.)
 - 학부모 모니터링단 설문조사('25.2.12~2.18)
-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공청회('25.2.13.)
- 시도교육청·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24.11.~25.4.)
 - 의견 수렴('24.11~'25.4.) 및 시도교육청 간담회('25.4.4)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서면검토('25.4.11~4.16)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25.4.21)

Ⅱ. 현황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지속 증가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높음

* 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4.2%(초) > 1.6%(중) > 0.5%(고)

【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 학교급별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 경미한 사안에 대한 사안 접수·심의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닌' 사안 비중이 증가*하고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 비중은 감소**

* '21학년도 10.7% → '22학년도 13.5% → '23학년도 16.0%

** '21학년도 11.4% → '22학년도 9.4% → '23학년도 9.3%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23년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 중 학교급별 중대 조치(6호 이상) 비중*은 고>중>초등학교 순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낮음

* 초등학교 4.4%, 중학교 9.9%, 고등학교 12.9%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 중대 조치 건수 】



【 '23년 학교급별 중대 조치 비중 】



□ **학생·교원·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가정교육 부족'**

- 중·고등학생, 교원,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인성 교육 부족'으로 나타남('24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다만, 초등학생은 '과도한 스마트폰, SNS사용 부작용',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 순으로 응답

(단위: %)

구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건강한 또래관계 또래문화 부족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	교육 3주체 간 신뢰 부족	과도한 스마트폰, SNS사용 부작용	입시위주 교육	기타
학부모	29.0	18.7	13.8	4.9	30.4	2.5	0.7
교원	38.0	22.1	7.1	3.9	25.8	2.0	1.2
초등학생(4~6학년)	22.6	16.8	20.4	6.6	26.0	2.5	5.1
중학생	26.8	19.0	25.0	4.2	19.7	3.4	1.9
고등학생	29.5	19.9	24.3	3.6	17.5	3.9	1.3
전체	31.3	20	14.8	4.5	25	2.5	1.9

- 전국 성인남녀 대상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교육 부재',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폭력적 대중매체 접촉' 순으로 응답

* 가정교육 부재 36.9%,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24.4%, 폭력적 대중매체 15.8%, 개인주의적 사회분위기 14.9%, 경쟁적 교육제도 4.8% 순('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 **코로나19 시기 사이버폭력이 급증 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증가**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년 사이버폭력이 급증한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24년 1차와 2차 조사 모두 사이버폭력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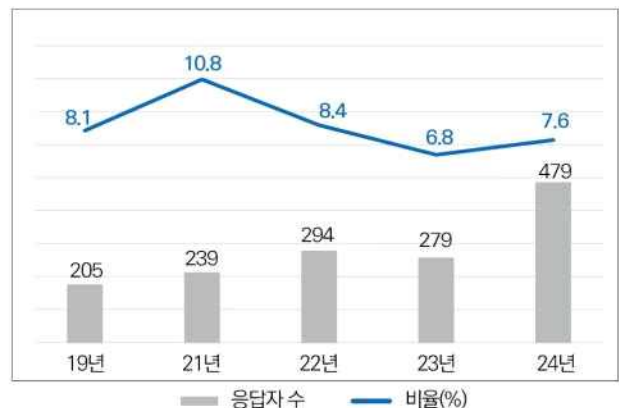
* ('24년 1차 전수조사 사이버폭력 비중) '23년 6.9% → '24년 7.4%

('24년 2차 표본조사 사이버폭력 비중) '23년 6.8% → '24년 7.6%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추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추이】



Ⅲ.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20~'24)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정 중장기 기본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 지원,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
-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비전	목표	정책영역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 학교폭력 발생 증가 및 양상 다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 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강화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진술권 보장 및 전담지원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등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 강화

비전	추진방향	정책영역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23.12)】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적극적 추진 및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계획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사안조사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및 교원 업무 경감에 기여
- 학교전담경찰관(SPO) 105명 증원(총 1,127명),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위촉, 사례회의 참석 등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확대와 참여 기반 예방문화 조성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24)
 - ※ 어울림 프로그램(90종),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52종),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패키지(7종)
-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하여 학생·교원·학부모 간 상호 신뢰 기반 구축('24~)
 - *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하는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 활동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 위(Wee)프로젝트 등 전문지원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24. 1,168명)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체계 강화
 - ※ 위클래스: ('19) 7,230교 → ('24) 9,115교 / 위센터: ('19) 216개소 → ('24) 242개소
가정형 위 : ('19) 17개소 → ('24) 19개소 / 병원형 위 : ('19) 9개 → ('24) 16개,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 2개 신설('21) / 전문지원기관 : ('20) 163개소 → ('24) 751개소
-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피·가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분리 제도 도입('21) 및 분리기간 연장('24.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및 교원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확대
 - ※ ('19년 2학기)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 ('24년 1학기)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 측의 심의 요청 시 학교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3항 신설('23.10)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명시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근거** 마련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9)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3.9)
 - ** 「초·중등교육법」 개정('24.12)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응

- 학교생활기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로 연장하도록 법령* 개정 및 대입반영 의무화(‘26~)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24.3.1 시행)
- 기록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및 가해학생 반성 정도를 고려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24)
-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위반 시 6호 이상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3.10)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제고 및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20)
-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24. 176개)’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지원

【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 실적(2024학년도) 】

구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단	피해학생 법률지원단
인원	2,280명	1,168명	2,527명	642명
지원 실적	54,470건	3,140건	5,531건	4,315건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안조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및 교원 업무 경감(‘24)

※ (‘24) 학교전담경찰관 1,117명(‘24년 105명 증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80명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효과 】

구분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응답 비율	42.7%	24.4%	20.6%	6.3%

※ 만족도 조사 결과(2024.8.28.~9.6., 교원 7,897명 응답,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참여 부족과 학생의 마음건강 지표 악화

- 학교문화 책임규약 도입('24, 82%)으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실제 가정-학교 소통·참여와 정보·상담 제공에 편차 존재
-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수업 확대로 예방교육·활동과 또래 간 상호 작용 기회가 감소하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

* ('20년 대비 '24년 학생건강행태조사) 외로움 경험률 14.1% → 18.8%, 우울감 경험률 : 25.2% → 27.7%, 범불안장애 경험률 11.2% → 14.1%

🔊 202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생들이 선호하는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 이나 활동(25.8%)', '방송/동영상 시청을 통한 예방교육(24.6%)', '학생참여활동 (23.6%)' 순 ('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생·학부모·교원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신뢰의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정서 역량 기반의 예방교육 필요

□ 신·변종 사이버폭력 발생 증가

- 사이버공간 내 언어폭력 수준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SNS 계정 뺏기 등 학생들 간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지속 등장

* 학교 피해 현황조사('24.1.1~10.25) 결과 피해신고 542건, 피해자 901명(수사의뢰 457건)

**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범죄 신종유형 발생경보) ① SNS 계정 뺏기 ② 틱톡 가입 강요 ③ 선불카드 발급 강요 ④ 키보드 셔틀 ⑤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등

- 익명성, 시공간적 무제약성 등 사이버폭력의 특성 상 학급교체, 전학 등 가·피해학생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 부족

🔊 202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피해응답률은 전체 2.1%로 전년대비 0.4%p 증가, 목격응답률은 6.0%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가해응답률은 0.9%로 전년 대비 0.9%p 감소

⇒ 조사 시기('24.9~10) 사회적 논란이었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적은 수의 가해행위로도 많은 직·간접적 피해자와 목격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의 특성이 반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인 조치 마련 필요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 교육적 해결 감소 추세

-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19.9)하였으나 신고 대비 자체해결 건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증가
 - * ('20) 67.74% → ('21) 64.78% → ('22) 62.81% → ('23) 61.63%
 - ** 행정심판/소송 청구 건수: ('21) 1,295건/255건 → ('22) 1,585건/456건 → ('23) 2,223건/628건
- '23학년도 초등 1,2학년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25%이며,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 아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 신고 시 즉시분리 제도를 악용하거나 조치 약화 또는 보복을 위한 맞신고를 하여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 증가

🔊 관련 언론보도 현황

- "학폭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학교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쿠키뉴스, '21.6.30)
- 학폭 '즉시분리' 노린 '맞보복'에...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한국일보, '23.6.19)
- 학폭 신고했더니 "나도 당했다"..."맞학폭" 번진다 (MBC, '24.7.16)

👉 중대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응하되, 또래 간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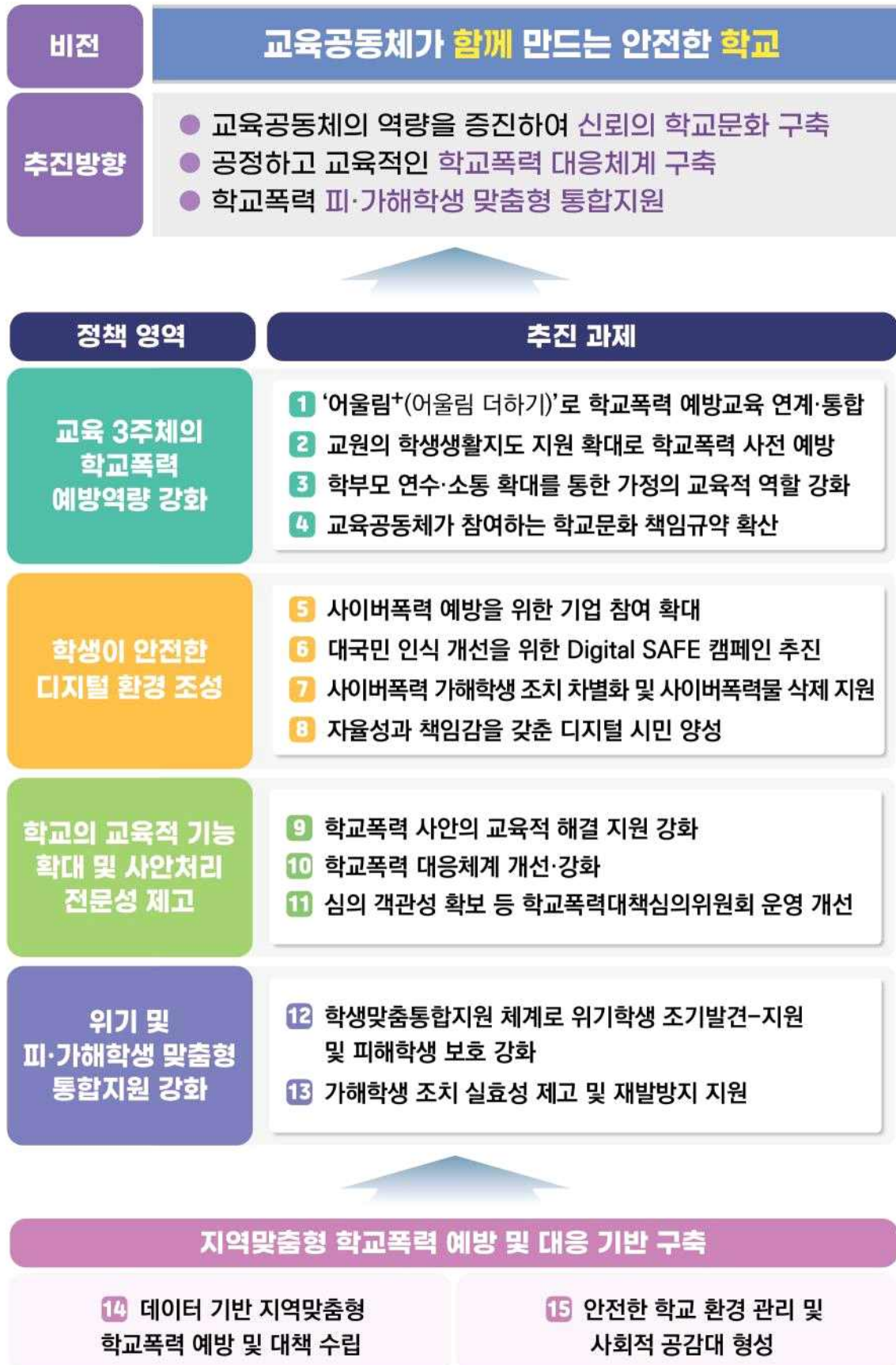
- 피해학생 재심 기능 행정심판 일원화*로 지자체 역할이 축소되어 사회봉사 기관 섭외 등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미흡
 - * 피해학생 재심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자체)에서 행정심판으로 일원화('20)
-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역별 특성, 사안발생건수 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한계 존재

🔊 현장의 소리 (현장 간담회, '24.11.)

- 특별교육·사회봉사기관이 부족하고 학교 차원의 기관 섭외가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지역 내 대학, 청소년기관, 복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
- 지자체가 지원청, 경찰서, 지역 내 봉사단체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수행하는 경우 인식개선의 효과가 좋음

👉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 지역 내 특화기관 등 지역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추진 필요

IV. 기본방향



V. 세부 추진과제(안)

1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주요 신규과제

- ❖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교육공동체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계·통합
- ❖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경비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 ❖ 직장교육과 연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1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어울림+’ 개발·보급

- (어울림 고도화) 기존 학생 대상 어울림(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교육3주체 대상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별 프로그램을 연계·통합 제공
 - ※ ('26)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27~'28) 시범 적용 → ('29) 확대·보급
- (중점내용) 학교폭력 대응 방안 외 사회정서역량(학생), 생활지도 전문성(교원), 자녀 이해와 소통(학부모) 등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 (자료 형태) 영상자료, 게임, 메타버스 등 대상별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도란도란’(예방교육 통합사이트) 탑재

【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개요 】

	어울림	어울림+ (어울림 더하기)
대상	학생	학생, 교원, 학부모
내용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신고 절차, 공감·의사소통 등 어울림 6대 역량	(학생) 자기인식, 공동체 관리 등 사회정서 역량 (교원) 학생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 (학부모)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
자료형태	지도안, PPT, 학습지 등	영상, 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학습방식	교사 중심, 강의형	대상자 맞춤형, 체험형

- (진단 기반)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 결과, 학교 특성 등을 토대로 학생·교원·학부모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활용

* ('26) 진단도구 개발 정책연구 → ('27~'28) 진단도구 개발·시범 적용 → ('29) 보급

예시 ‘어울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제공

- (사회정서역량 진단 결과 자기인식역량 강화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생 대상 ‘감정 표현’ 활동 콘텐츠, 학부모 대상 ‘자녀 감정 이해 및 코칭’ 교육자료 제공
-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원 대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상담’, 학부모 대상 ‘가정에서 다양성 교육 방안’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 제공

□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 (사회정서교육)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25년부터 보편교육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 모든 교사가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사회정서교육 이수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필수) 이수 시수로 인정)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구성 】

영역(4)	① 자기 ② 대인관계 ③ 공동체 ④ 마음건강
핵심역량(6)	① 자기인식 및 ② 조절 ③ 관계인식 및 ④ 관리 ⑤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⑥ 정신건강 인식 및 관리
운영시간	교과(연계)수업 및 창체시간, 조·종례시간, 학교자율시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활용
보급 자료	학교급별(초저, 초고, 중, 고) 6차시(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교수학습 자료(PPT, 동영상 등)) ※ 수업 시간 외에도 교사가 언제든지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5~10분가량의 단편 교육자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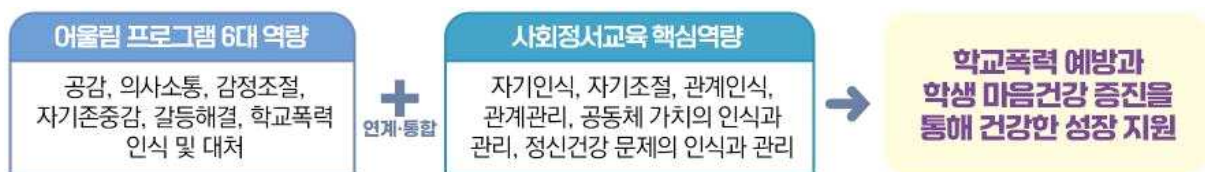
- (프로그램 확대) 학급담임, 교과 및 범교과, 가정 등 사회정서 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25.12)

※ △ (담임) 아침조회 시간 교육자료 150종 △ (교과 및 범교과) 학교급별 24종 △ (학부모) 가정연계 사회정서교육자료 1종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자료 1종

- (교과 신설) 어울림-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한 ^{가칭}마음건강 교과 선택과목 도입* 및 마음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25~)

* ('26) 시도교육청 선택과목 승인 인정도서 개발지원 → ('27~)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선택과목 채택 확대

** 학교의 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법적 근거 마련(「학생마음건강증진법」 제정안 발의('24.11.25.))



- (어울림학기제) 학교급별 전환학년인 초4, 중1, 고1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어울림+' 우선 도입 및 사회정서교육 집중 운영

※ ('26) 프로그램 개발 → ('27) 어울림학기제 시범운영(교육청별 3개교, 총 51개교) → ('28) 전국 확대

사례 대구교육청 : 초5, 중1 대상 마음학기제 운영

- (대상) 심리·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초6, 중2)를 대비하여 초5, 중1학년 대상 운영
- (내용) 사회정서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조절능력 및 회복탄력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초, 중 각 15차시)하고, 마음교육 워크북 개발·보급
- (운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담임·교과교사가 운영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로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

- (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시수 확대(中 102→136시간), 아침·점심시간 등 틈새운동 확산,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적용 확대 등 건전한 신체활동으로 사회성 함양 지원
 -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팀 수 : ('25) 136천팀(예정) → ('27) 138천팀 → ('29) 139천팀
 - ※ (부산교육청)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사회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
- (예술동아리) 오케스트라·합창·뮤지컬 등 체험 중심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소통·배려 등 학생 인성 역량 함양
 - ※ 학생예술동아리 운영지원 : ('25) 5,700개 → ('27) 5,800개 → ('29) 5,900개
 - ※ 학교예술 전문인력을 학생예술동아리 등 시도별 학교예술교육 사업과 연계 추진('25~)
- (전문가 지원)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생 서포터즈단, 체험 연극(위헬프), 학교 축제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애이해·다문화교육 내실화

- (장애이해교육)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보급 및 백일장·공모전 등 추진
 - * (유) 유아용 교육 콘텐츠 (초) 대한민국 1교시(라디오 방송) (중·고) 장애이해드라마(TV 송출)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 특수학교 상담교사(업무 전담교사 포함) 배치율: ('24) 43.5% → ('29) 80%
-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내 상호 이해 문화 조성
 - ※ 다문화교육을 2022개정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실시 권고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 교우관계 형성 등 지원

사례 다문화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 프로그램 예시

- (학교특색프로그램) '세계인의 날'과 연계하여 다문화 관련 독서골든벨, 퀴즈대회 등 운영
- (학생동아리) 이주배경학생 대상 동아리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연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이주배경가정 학업·취업·정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교원 연수 강화로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제고

- (학교관리자) 교장·교감 연수 시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교과목* 필수 편성 및 교원-학부모 간 소통·신뢰하는 학교풍토의 중요성 등 관련 내용 포함
* (예시) 긍정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과 의사소통기술, 협력적 관계형성 등 리더십 함양 등
- (신규 교원) 신규교사·저경력교사 연수 시 생활지도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26~)하도록 교육청·연수기관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지원
- (예비 교원) 교직과목의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봉사 등 생활지도 현장경험 제공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도 개선) 생활지도 관련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법률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고시 개정 추진(~'26)
- (예산 지원)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생활지도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경비 지원 확대

* (예시) 교실 또는 복도에 비상벨 시스템 구축, 행동중재전문가 등 보조인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25) 생활지도 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26~) 제도 실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내용('25.4.1.개정) 】

- ① 정서행동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 협조 의무 규정,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신설)
- ② 긴급한 위험상황에 교원이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안 제20조의2),
- ③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근거 마련 및 교육감의 경비 및 인력 지원 의무 규정(안 제20조의4 신설)
- ④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규정 마련(안 제20조의5 신설)

- (우수교원 우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존중되도록 지속 홍보하고, 생활지도 우수교원에 대한 장관 표창 및 우대 방안* 마련

* ('26) 정책연구 → ('27) 교원인사관리 원칙 등 규정 개정 → ('28~) 우대방안 적용

참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초·중등교육법(23.9)」, 제20조의2에 근거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담, 제지, 분리 적용 (2024)



법제화

상담·치료, 제지, 분리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위한 법률 근거 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5. 4월 개정)



행·재정적 지원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및 지침 마련 (2026~)



③ 학부모 연수 · 소통 확대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교육 활성화

- (직장교육)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협업하여 자녀 인성 교육,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한 직장교육 실시('26~)
 - * (예시) 일·가정·생활 균형, 가족생활 증진, 자녀양육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 교육'에 자녀 인성교육, 학교협력 등 학부모교육 포함하여 추진
- (가이드북) 학부모 5대 역량군*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녀 발달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을 직장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안내·배포
 - * △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 역량군(역량 중심 성장형 학부모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24.12.))
- (상시학습제) 학부모용 온라인 강의자료 개발 및 '인재개발플랫폼' 탑재·상시학습 인정으로 공직사회부터 직장교육 연계 우선 추진('26~)

□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한 학부모연수·상담 지원

- (콘텐츠 제공) '함께학교 플랫폼', '학부모On누리', 'K-MOOC' 활용, 온라인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
 - * 자녀교육 이외에도 '교사와 소통, 건강한 학교 참여, 갈등 회복'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보호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운영('25~)



- (상담·정보 공유) '함께학교 플랫폼' 내 전문가 상담 및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자녀교육 관련 고충 상담 및 정보 공유 지원
 - * 함께학교 플랫폼의 [함께톡톡] 게시판 내 [전문가상담] 메뉴/[함께행복] 게시판 내 [커뮤니티] 메뉴 활용, 학부모 채팅방 운영

- (교원 간 정보 공유) '함께학교 플랫폼' 내 교원 간 학부모 상담 기법 등 정보 공유 기능*을 신설하여 교원-학부모 신뢰·소통 문화 확산

* 함께학교 플랫폼의 「교원연구실」 게시판 내 「학부모 상담 이렇게」 기능 신설·활용(25.4~)

4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확산

- (학교문화 책임규약 확산) 학교폭력 발생 현황,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한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인근 학교로 확산

* '29년까지 학교신청, 발생 현황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2,000개교 내외 운영 추진

※ ('24) 전국 초·중·고의 82%가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 (~'29) 모든 학교에서 운영

- '어울림+' 우선 도입, 학생·학부모용 책임규약 가이드북·교직원 연수 지원 등 책임규약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연수 집중 지원

【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예시 】

❖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구성원 모두가 폭력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 활동

- (학생)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학부모) 자녀가 학교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교사) 학교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학교구성원 서명 캠페인



교육3주체가 함께하는 선포식



학생 자치활동 연계 캠페인

- (함께학교 연계)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함께학교 캠페인(연중 운영)'과 연계하여 학교구성원의 지속적 참여 유도 및 소통·협력 기회 확대(25~)

< 2025년 함께학교 캠페인 추진 예시 >

'25 계획	▶ (3월) 학생·교원·학부모가 각자의 책임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포식 ▶ (5월) 행복한 '함께학교'를 위한 학생·교원·학부모·학교의 미담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의 캠페인 추진 ▶ (9월) 학교문화 책임규약 재다짐 및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홍보 활동 ▶ (11월)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문화 책임규약 우수사례 공모전 ▶ (12월) 미담사례 자유티스토리 나눔, 학부모지원사업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주요 신규과제

- ❖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①기업 참여 확대 ②대국민 인식 개선 ‘Digital SAFE(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 ③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신속 삭제 지원 ④디지털 시민 양성 추진

1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 사이버공간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 (정기적 협의) 범부처 실무협의체* 회의 시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등이 참여하여 정부 부처와 협력과제 발굴 추진
 -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 : (참여 부처/기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애플,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잇따라 강화된 아동 보호 기능 도입('25.3.1., 매일경제)
- (책무성 강화) 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상시 점검
 - *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점검을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투명성 보고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노력과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등) 제출·공개율 : ('25~'29) 100%
- (민관 협력) 디지털ESG 협의체* 등 기업, 민간 단체와 함께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자율정책 독려
 - * 디지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통신사, 디지털 기업, 금융·유통 등 18개 기업 활동 중('2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조기 감지·차단

- (기술 고도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R&D 지원 강화
 - ※ 딥페이크 감지·생성억제,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추적 기술 등
- (조기 감지) 사이버폭력 감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앱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 * 사용시간 관리, 사이버 언어폭력·성범죄 의심문자 감지 등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및 이용 시간 등을 관리 지도
 - ※ 사이버안심존 운영 학교 : ('24) 3,148개교(누적) → ('29) 4,500개교

-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불법 도박·음란물 등 유해매체 단속·삭제 등 조치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 요청

** (예시) '누리캡스'(명예 사이버경찰)를 활용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집중 모니터링 및 차단삭제

②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 (캠페인 추진) 아동·청소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Digital SAFE*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캠페인 추진 및 유튜브 등 송출

*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Digital SAFE 포럼' 매년 개최('25~) 및 우수기업 교육부 장관상 수여

사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 코끼리'

- 교육부-여가부-경찰청-푸른나무재단-사랑의 열매-삼성전기가 10년간 (2020-2029) 함께 운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젝트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 프로젝트 선정('24)



- (반복적 노출) 대중교통, 편의점, EBS, SNS 등에 사이버폭력 예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학교·교육청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다각화

※ (사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댄스 챌린지, 경남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웹드라마 등

- (참여 독려) 기업 및 언론사에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운영, 캠페인 주최 등을 독려하는 범부처 장관 명의 공동서한문 발송

□ 사이버폭력 신고·예방 관련 정보를 우선 노출하여 경각심 제고

- (공익정보 우선 제공)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검색 시 신고·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개선 추진

- (기사 연계) 언론사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관련 기사 하단에 신고·상담 전화번호 및 관련 앱 안내

※ (사례) 자살 관련 기사의 경우 하단에 자살예방·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 안내

③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

□ 사이버폭력 특성에 맞는 조치 추가

- (조치 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글·영상물 삭제 명령,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인 가해학생 조치 신설

※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25~)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조치 개편('27~)

※ (영국 사례) 사이버폭력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 가능

- (맞춤형 특별교육 제공)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대상 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사안 특성별 특별교육 확대 실시

* 청소년미디어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Wee)센터 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특별교육 내실화

* 인터넷 윤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공감, 가해학생 정서조절 스마트기기 사용법 등의 내용 포함

□ 사이버폭력 가해 콘텐츠 신속 삭제 지원

- (연계 강화)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 신속 지원을 위해 학교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심위 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교육청-방심위 '핫라인 시스템' : ('24) 11개 교육청(부산·경북·대구·강원·제주·충북·대전·울산·광주·전북·인천) → ('25) 17개 교육청으로 확대

사례 교육청-방심위, 업무협약 통한 '핫라인 시스템' 구축('24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성범죄 촬영물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 교육청-방심위 협력망 구축 및 방심위에 시도교육청 담당 핫라인 전담직원 배치
- 아동·청소년 유해제작물·누리집 자동차단 프로그램 보급

- (안내 강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국내 인터넷임시조치 제도* 등 삭제 지원 기관·제도·신청 방법 등에 대한 학교·학생 대상 홍보 강화

*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는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당한 자가 신고할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하여 30일간 임시조치(게시중단) 가능

④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 디지털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지원
- 종전 대비 확대된 정보수업 시수*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 및 교수·학습 사례 발굴·제공

* 2015개정 교육과정 대비 2022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 수업시수 :
(초등) 17시간 → 34시간 이상, (중등) 34시간 → 68시간 이상



- (자료 접근성 확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 (교원 연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수업모델 및 가이드라인('24)을 토대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개설('25) 및 확대('26~)

※ ('25) 선도 교원(초·중·고) 200명(15시간 직무연수) → ('26~) 선도 교원(초·중·고) 300명

- (자료 보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수업 자료 등을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 교육지원 플랫폼(미리네) 운영

- (미디어 특강) 강의 시기별 미디어 관련 이슈를 주제로 초·중·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특강 운영(연중)

※ ('25) 희망 초·중·고 100개교 대상 시범운영 → ('29) 효과성 분석하여 단계적 확대

□ 범부처 협력 사이버 안전교육 강화

- (교육자료 보급) 부처별 사이버폭력 및 범죄 예방 등 사이버 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활용성 제고) 부처별 자료를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이트에 탑재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24) 부처별 예방교육 자료 목록(자료명, 링크 등) 안내 → ('25) '도란도란' 탑재

【 실무협의체 참여 부처별 주요 사이버폭력 및 범죄 예방교육 】

부처명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교육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개발·보급	사이버 어울림, 사이버스(메타버스 기반)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에 부처(기관)별 예방교육 자료목록 제공
경찰청	SPO 중심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신종 사이버폭력 사전 감지 강화 및 '신종유형 발생경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AI) 역기능 대응을 위한 디지털 윤리교육	딥페이크, 정보편향, 혐오와 차별 등 AI의 신뢰성, 편향성, 책임성 등 AI윤리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온라인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운영, 청소년상담 1388
법무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SNS폭력 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바른 사용 및 자기조절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 대상 올바른 게임 이용법, 게임활용교육 운영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주요 신규과제

-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사안 대상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도입
- ❖ 가해학생 조치 판단요소의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제고

①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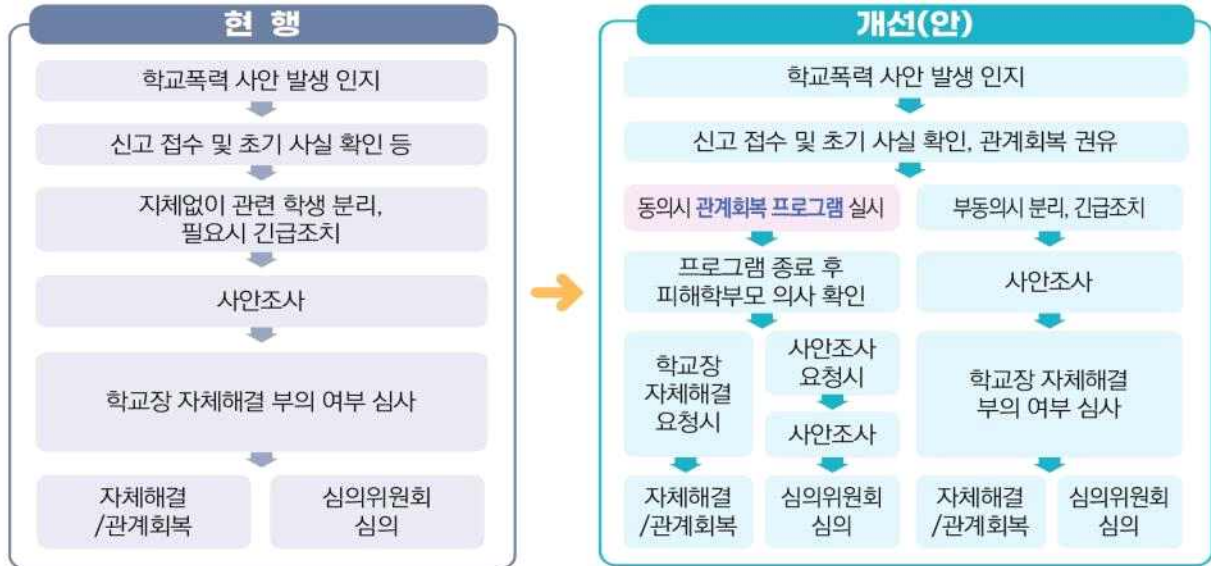
□ 초등학교 저학년·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추진

- (시범사업)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로 교육적 회복 노력을 우선하고,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 유예

※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25~), 시범운영('26~) 후 효과성을 평가하여 확대 검토 및 제도 개선 추진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우선 실시 시범사업(안) 】



- (관계회복 지원)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25년 초등, '26년 중등), 담당 교원 연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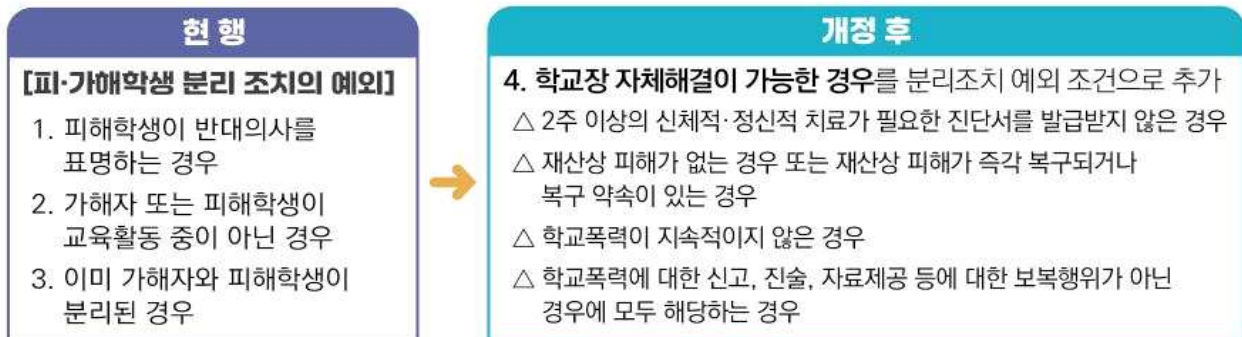
* ('24) 관계개선지원단 2,527명, 5,531건 지원 → ('29) 5,000명, 10,000건 지원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제도 개선

- (분리 조치 개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갈등 확산 방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해 분리 대상의 예외로 추가

※ 지체없이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6항) 가능

※ ('2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파·가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개정 추진



-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학생 보호) 파·가해학생이 동일 상급학교에 배정된 경우 요청 시 학급 배정을 달리 하고, 쉬는 시간·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방안 마련

②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 · 강화

□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통합지원 기능 확대

- (안착 지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 공간, 전담 인력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29)하고, 통합지원 기능 내실화
 - * (학교폭력제로센터)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 개선, 법률 등을 통합지원
- (교원 컨설팅) 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컨설팅단*'을 추가하여 학교의 초기 대응 및 전 과정(사안처리, 피해학생 지원 등) 조력
 - * 고경력 교사,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방문 컨설팅 ('26) 5개 교육청 시범 운영 → ('29) 17개 교육청 확대 운영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지원

- (전담조사관 내실화) 직무 분석 및 평가체계 개발을 바탕으로 활동 여건 개선, 법률 지원 등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25~)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에서 요청 시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 전문교육과정* 개발 · 보급, 연수 확대 및 선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지정을 통한 동료학습 지원
 - * ('24) 기본 교육과정 개발 → ('25) 직무분석 및 전문 교육과정 개발 → ('26) 전문교육과정 연수
- (담당자 지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수당·가산점(승진, 전보 등) 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
 - ※ ('25) 시도교육청 협의 → ('26~) 전보가산점 반영 추진

현행	개선(안)
[승진가산점 부여] - 점수 : 연 0.1점(개인 통산 1점 상한) -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제외 [수업시수 감면] -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지원	[승진가산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전보가산점 부여] - 시도교육청별로 전보가산점 신설 [수업시수 감면] -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기준(안) 마련

- (후속 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 종결 후 관련 피·가해학생 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③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가해학생 조치 판정기준 마련 등 심의의 공정성 제고

- (조치 판정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지역별·위원회별 심의 결과의 편차 감소
- 심의자료 및 가해학생 조치결과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요소별 판정 점수·가중치 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 개정
- ※ ('24) 선도·교육조치 702건 사례 분석 등 기초연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 개정 → ('25) 심층연구 →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개정

현행	개선(안)
- 판정점수 : 0점~4점(5구간) - 가중치 : 요소별 동일(20%)	- 판정점수 : 0점~5점(6구간) - 가중치 : 요소별 차등 비율 부여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비중 확대

- ※ (기본 판단요소)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 반성 정도, △ 화해의 정도 (부가적 판단요소)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위원 역량 강화) 심의위원별(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 ('24)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개정 → ('25~) 학부모·전문가 등 위원별 교육 자료 개발
- (특수성 고려)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성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 (현행) 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개선) 장애학생, 이주배경 학생, 성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에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26.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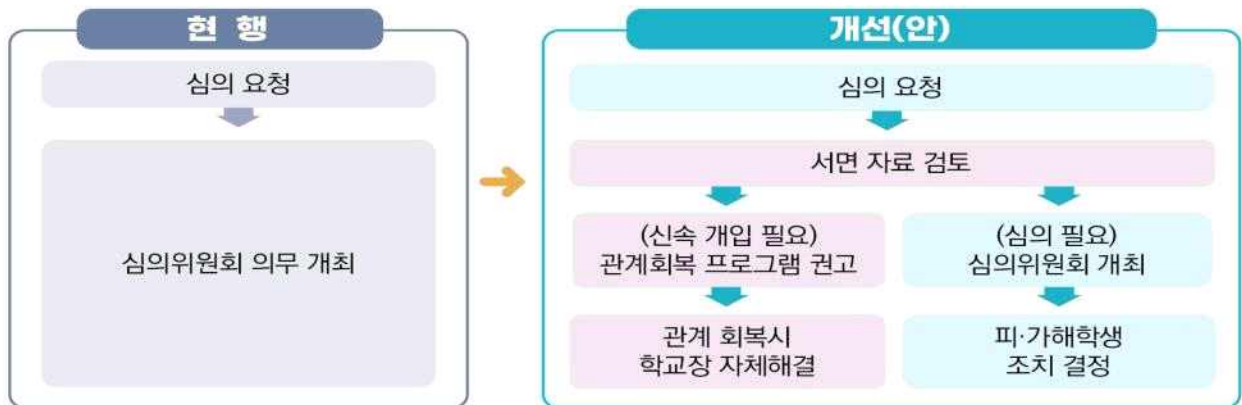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한 심의 지연 방지

- (심의 전 관계회복 권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심의 전 서면검토를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권고

*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나 학부모 미동의로 심의 요청한 사안, 양측이 화해하여 신고 철회를 원하는 사안 등

※ ('25~)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 → ('26~'27) 시범운영 → ('28~) 확대 및 제도화 검토

【 심의 전 서면검토-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권고 시 절차 】



- (여건 개선) 심의위원 정원(현행 50명) 확대 및 심의실 추가 확보(~'29) 등을 통하여 심의 지연 방지

※ ('25~)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27~)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심의위원 정원 확대

-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수 실시, 가이드북 보급 등 역량 강화('25~)를 지원하여 학생 간 관계 회복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 내실화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주요 신규과제

-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계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 통합지원 강화
- ❖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전면 개편 추진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조기발견 및 지원 기반 마련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학생맞춤통합지원) (현재) 기관·사업별 분절적 발견·지원 시스템 → (개선) 사업 및 전문인력간 연계·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개편

- (조기발견)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교장(감)·담임·책임·상담·보건교사 등)이 함께 사안 발생 전 또는 초기에 발견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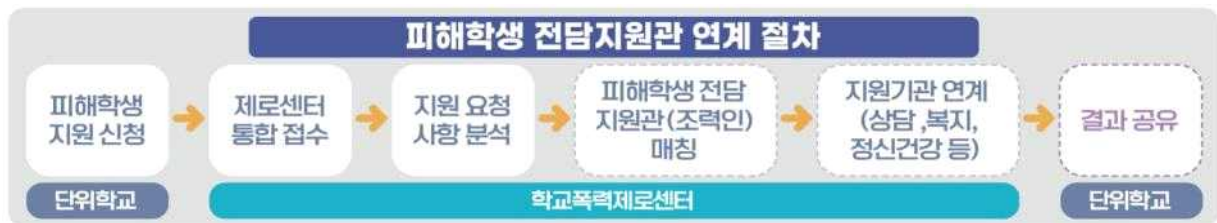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조기 개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사례

- ▶ (울산 A초)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후,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조기 개입(사제 동행 등)하니 학교폭력이 0건이 되었어요."
- ▶ (서울 B중)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통해 학생에 맞춰 지원을 했더니 학생의 학교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다가 학교폭력 등 우려가 되는 학생을 미리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 전담지원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지원 강화

- (역할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배 확대*하고, 필요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팀)에 참여하여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 ('24)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168명, 3,140건 지원 → ('29) 2,400명, 10,000건 지원



- (학교 단위) 개별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가진 피·가해학생의 경우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교장(감) 및 관련 교직원이 함께 대응

※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24. 12.)

- 학생 상황에 따라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진단·개입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청 단위)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청-학교-지자체-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지원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 시 학교폭력 관련학생 지원 체계 변화



□ 학교·전문지원기관 역량 강화로 피해학생 심리·정서 지원

- (학교의 상담 기능 강화) 학교에서 신속한 피해학생 초기 상담이 가능하도록 Wee클래스 설치를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 ('25~)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Wee클래스 설치율 반영하여 Wee클래스 설치 확대 촉진
- (전문지원기관 질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Wee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가이드북 제작·보급 및 컨설팅 실시
 - * ('24) Wee센터, 병원, 민간 상담·심리센터, 기숙형·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 등 751개
- (프로그램 보급) 학교급별, 피해유형별 치유·회복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연수 운영
 - * ('24) 초등학생 저·고학년용 프로그램 2종 개발 → ('25) 중·고등학생용 4종 개발 → ('26) 전문지원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4종 추가 개발
- (접근성 제고) 전문지원기관 현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과 연계하여 필요한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도' 제공
 - ※ ('25) 전문지원기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 ('26) 데이터 공유 및 유관기관 지도 제공
-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 지원 및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족단위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 * Wee센터(출장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등

□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법률·의료 지원 강화

- (법률 지원)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자문 등 지원
 - ※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담지원관(조력인)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지원
-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내 배치된 법률상담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상담·소송구조 등 법률서비스 지원
- (의료 지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위험한 학생에 대해 의료기관 연계 및 심리적·신체적 상해 등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 (지원대상) ('24) 18,000명 → ('27) 50,000명, 개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강력 범죄(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지원

- (교육·치료 위탁기관 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복합 지원을 위해 교육·치료 등을 병행 지원하는 위탁기관 확대

※ 교육+치료 위탁기관 : ('24) 17개 → ('27) 34개 → ('29) 40개

□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 (이주배경학생) 사안 발생시 조사·심의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여가부)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서비스* 지원

* 이주배경학생이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역 또는 관련 전문가 참여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학교폭력 표준 교육자료’* 다국어 번역을 제작·배포하여 이주배경학생·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 다국적 언어 교육자료 제작·배포(경찰청)】

- (개요) ‘학교폭력 표준 교육자료(12종)’을 다국적 언어로 번역한 △ PPT △ 오디오북 △ 영상자료를 제작·배포
- (추진계획) 베트남어^{25.2월} → 중국어^{25.10월} → 그 외 8개 국어^{26년}



-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인권 보호 모니터링 및 더봄학생* 지원 강화

* 학교(성)폭력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신속한 감지 및 대응을 위해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법률, 폭력피해 지원, 상담, 교육, 의료 등 5개 영역 1,874개(25.4.기준) 기관이 등록·운영 중이며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 제공

②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 가해학생 조치를 전면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선도 방안 마련

- (실효성 제고) 학생 수 감소, 사이버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25~)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조치 개편('27~)

현행 조치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	----------------------	-------------	-------------	--------------------	-------------	-------------	----------	----------

- (조치 차별화) 사이버폭력·성폭력 등 학교폭력 양상 및 특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조치 처분 검토 및 개발

해외사례 독일 베를린 교육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 학교에서 갈등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교육적 조치' 사용
 - ① 학생과의 교육적 상담 ② 합의 ③ 구두 견책 ④ 학생기록부 기재
 - ⑤ 발생한 피해배상 ⑥ 대상물의 일시적 압수
- 교육적 조치로 분쟁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저해하는 경우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징계조치' 부과
 - ① 서면징계 ② 최대 10일까지의 수업 배제
 - ③ 학급 교체 또는 다른 학습 그룹으로의 교체 ④ 전학 ⑤ 퇴학

□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전문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 확대* 및 출석정지(6호) 이상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상 3일 이상 장기기간의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 ('24) 1,075건 → ('25) 3,000건 → ('26) 4,000건 → ('27~) 5,000건

- 법무부의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전국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에서 전문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효과성 검증 도구* 활용

* 정책연구 등을 통해 인식 변화율 측정도구 개발 추진, 교육 전·후 가해학생의 법 규범 태도 및 행동변화 측정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비센터) 특별교육 개선(안) 】

구분	기존	개선
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선별대상 없음)	6호~8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중 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병과 받은 학생(선별 의뢰)
특별교육 부과 시간	심의위원회에 따라 부과시간 다양	심의위원회에서 5호 특별교육 조치의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부과 ※ 청비센터 의뢰시 1일 6시간/3일 18시간 등 6시간 단위로 부과
장소	청비센터	청비센터 교육 + 교육지원청 장소 제공 시 찾아가는 교육 (청비센터 교육 강사 지원)

- (청소년경찰학교)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 및 출석정지(6회) 이상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상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특화 교육 체계 마련 및 시범운영(~27) → 성과 점검 후 확산(~29)

- 선별·의뢰된 가해학생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학교→청소년경찰학교)하고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 (전담지원기관 확대) Wee센터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정서 위기 치료 지원

사례 서울 꿈세움Wee센터(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기관)

- 2017년부터 가해학생 특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중
- 폭력 허용도와 분노조절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성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가해 학생의 학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관련 교육 필수 이수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가·피해학생 선도·지원 역할 강화

- (역량 강화) 변화하는 학교폭력 환경에 선제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준·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 체계 】

- ▶ (자기주도학습) SPO 핸드북, 청소년보호 매뉴얼, 청소년면담 가이드북 등 자료 제작·보급
- ▶ (시도청 교육센터) 학교전담경찰관 기초 실무과정(1년 미만 SPO 대상), 전문화 과정 운영
- ▶ (인재개발원) SPO 강사양성과정 신설 및 실무역량 심화과정 확대
- ▶ (위탁교육) 외부 전문기관에 강의·면담기법·소년법령 등 위탁교육 과정 운영

- (가해학생 선도) 가해학생 면담, 특별교육, 멘토링 등 가해학생 선도 및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SPO가 전학 후 3개월간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교사와 함께 초기 학교적응 지원('25~)
- ※ 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면담 실시 및 학교장과 사안 정보 공유
- (2차 피해 방지)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및 보복 우려 시 맞춤형 순찰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 **특별교육 · 사회봉사 프로그램 내실화**

- (기관 확대) 지역 청소년·문화·복지기관 등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확대 및 해당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성문화센터(성교육),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온라인도박중독 치유) 등 학교폭력 가해유형에 따라 전문기관 활용
- (보호자 특별교육) 평일 특별교육 이수가 어려운 보호자를 위한 퇴직 교원 활용 및 야간·주말 등 탄력적인 특별교육 운영 방안 마련
 - ※ 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찾아가는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 (가족단위 교육) 보호자-학생의 가족단위 집단교육 · 상담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소년법 적용 수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 교육**

- (소년보호사건)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대 사건의 경우 필요시 우범 소년 송치제도,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소년법 제4조제2항, 제3항)
- 학교장, 교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자료 보급 및 연수 확대
- (사후관리)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관찰 멘토링'* 제도 확대 및 멘토 교사 인센티브 강화
 - * 멘토 교사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멘티학생을 1:1 멘토링으로 결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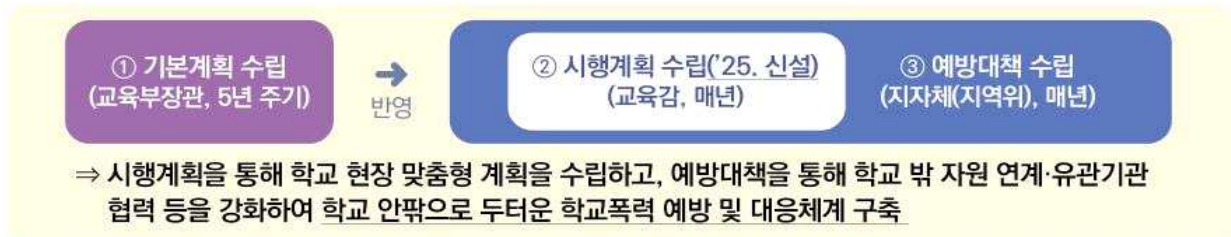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주요 신규과제

- ❖ 교육감·지역위원회(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 지역위 중심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경보’ 발령
- ❖ 계단·복도 등 주 이동통로, 특별실 주변 등에 학내 CCTV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 (연계적 계획 수립)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생 현황,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교육청)·예방대책(지자체) 수립
※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예방대책 보고 의무 신설(25.1)



- (대학 연계)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혁신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 상담·교육·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모델 다양화 및 확대
※ (모델 예시) 지역대학의 상담학과, 교육학과 등 인적 자원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보호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내 지원센터 구축

사례 충남교육청-백석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전담기관’ 지정

- (대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회 이상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 (내용) 학생 개별 인성검사 분석으로 상담·교육·변화 프로그램 제공

- (기관 활용) 지역기관이 가해학생 사회봉사·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지자체에서 평가 가점, 예산 등 인센티브 지원

□ 데이터 기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지원

- (실태조사 개편)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특징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항 분석 및 개편 추진
※ (‘25) 정책연구 → (‘26) 문항 개발 및 시스템 반영 → (‘27) 시범조사
- (질적 조사)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발생 원인, 주요 정책 효과성 등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질적 조사 추진 검토
※ (예시) 1차 전수/2차 전국 표본조사 → 1차 조사결과 기반 2차 지역특성별 질적 조사

□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

- (경보 발령) 지자체, 교육청, 시도경찰청이 함께 지역 내 학교폭력 특성을 관찰·분석하여 학교·가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보 제공

※ (사례)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 관련 정보를 학교·가정에 알려주는 '스쿨벨 운영

【 학교폭력 경보 시스템(예시)】



- (안전 인프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이동이 많은 계단·복도 등 주 이동통로, 특별실 주변 등에 학내 CCTV 설치 확대
※ 국회, 학교구성원 등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 추진
-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에 지자체 방법용 CCTV 설치 확대 및 지역 경찰청과 협력하여 순찰활동 강화
- (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운영 지속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 학교 수(25. 1인당 10.7교) 완화 추진
- (위험환경 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청소년유해업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교육청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점검 실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기별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급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비폭력 문화 조성

※ 찾아가는 소통형 문화공연, 체험연극, SNS를 활용한 참여형 활동(챌린지 등) 등

- (대국민 인식개선) KBS·EBS 등 공영방송, 기업 등과 함께 공익영상 제작·송출, 포럼·캠페인 개최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국민포럼 시 표창수여 추진



언어문화개선 공익광고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사이버폭력예방 대국민 포럼

붙임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교육3주체의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의 학교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 제공

· 모든 학교에서 100%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02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폭력유형·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0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지역별·상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판차 존재

초등학교 1·2학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
('26-'27)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04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 1,168명, 3,140건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관 부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전담지원관 2배 확대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광·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29) 5,000건

05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
(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붙임2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과제	소관부처
1.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1-1. '어울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어울림+' 개발·보급	교육부, 교육청
☐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교육부, 교육청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로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청
☐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애이해·다문화교육 내실화	교육부, 교육청
1-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교원 연수 강화로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제고	교육부, 교육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 교육청
1-3. 학부모 연수·소통 확대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청
☐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한 학부모연수·상담 지원	교육부, 교육청
1-4.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확산	
☐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교육청
☐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함께학교 캠페인' 연계	교육부, 교육청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2-1.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 사이버공간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교육부, 과기부, 방통위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조기 감지·차단	과기부, 여가부, 경찰청
2-2.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교육부, 교육청
☐ 사이버폭력 신고·예방 관련 정보를 우선 노출하여 경각심 제고	교육부, 교육청
2-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	
☐ 사이버폭력 특성에 맞는 조치 추가	교육부, 교육청
☐ 사이버폭력 가해 콘텐츠 신속 삭제 지원	교육부, 여가부, 방통위
2-4.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 디지털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청
☐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교육부, 교육청
☐ 범부처 협력 사이버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여가부,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과제	소관부처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3-1.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추진	교육부, 교육청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제도 개선	교육부, 교육청
3-2.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강화	
☐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통합지원 기능 확대	교육부, 교육청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지원	교육부, 교육청
3-3.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가해학생 조치 판정기준 마련 등 심의의 공정성 제고	교육부, 교육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한 심의 지연 방지	교육부, 교육청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4-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조기발견 및 지원 기반 마련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교육부, 교육청
☐ 전담지원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 교육청
☐ 학교·전문지원기관 역량 강화로 피해학생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교육청
☐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법률·의료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4-2.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 가해학생 조치를 전면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선도 방안 마련	교육부, 교육청
☐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전문화	교육부, 교육청, 법무부,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가·피해학생 선도·지원 역할 강화	교육부, 경찰청, 교육청
☐ 특별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부, 교육청
☐ 소년법 적용 수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법무부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 데이터 기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지원	교육부, 교육청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여가부, 경찰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부, 교육청